

2024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4. 4.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회의명	2024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일시	2024. 4. 26.(월) 10시
회의장소	영상회의
심의위원회	제2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위원 이종수 위원, 이승민 위원, 원은자 위원, 권현정 위원 ○ 배석 이동판 정보공개팀장(간사), 박소영 주무관(서기)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23 :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조감도 제작비 지급(수상공간 조성과-363, 2023.08.02.) 문서 중 붙임문서 2건(방침서, 산출기초조서) ○ 2024-24 : 수변특례구역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배포(수변감성도시과-3988, 2024.3.18.) 문서(붙임파일 수변특례구역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포함) ○ 2024-25 : △△재정비촉진지구 3-8, 3-9, 3-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심의의결 관련 자료 ○ 2024-26 :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용역의 최종보고서 ○ 2024-27 : 제3차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처분결과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23 : 부분인용 ○ 2024-24 : 부분인용 ○ 2024-25 : 기각(일부각하) ○ 2024-26 : 기각 ○ 2024-27 : 기각

1. [의안번호 2024-23] :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조감도 제작비 지급(수상
공간조성과-363, 2023.08.02.) 문서 중 붙임문서 2건
(방침서, 산출기초조서)

○ 000 위원(장)

먼저 의안번호 제2024-23호 수상공원조성과와 관련된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000 위원님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장)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이 조감도 제작에 얼마가 소요됐는지 이 금액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작계약이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입찰로 됐나요?

○ 000 주무관

수의계약입니다.

○ 000 위원(장)

수의계약인데 이 뒷부분에 비공개 서면을 보면 회사 두 군데가 견적서를 제시했는데 이 □□□□□라는 데랑 계약을 하신 건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부분 비공개하신 것 같아요. 여기 CG 제작계획안인데 추진방향하고 추진계획은 공개로 하시고, 이 소요예산 부분을 비공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장)

그런데 이거 전체 다 공개했나요, 지금은?

○ 000 주무관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금액은 전체 공개할 계획이고요.

○ 000 위원(장)

소요예산 부분은 공개 의견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소요예산에서는 조감도 제작의뢰로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금액하고 똑같으니까 이 부분을 비공개를 하신 건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업체에서는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우선은 금액 공개를 안 했는데요.

○ 000 위원(장)

민원청구인이 여기서 혹시 떨어진 분인가요? 계약이 안 된,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어서 청구를 한 건가요?

○ 000 주무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정보공개 민원이 들어와서 방침서의 일부를 공개를 하고 연락을 한번 해 봤어요. 정확하게 민원인의 어떤 부분이 정보공개를 원하시는지 제가 알 수 없어서 금액 부분을 비공개를 하고 공개했었던거거든요.

○ 000 위원(장)

제가 기본적인 생각은 사실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 같은 경우는 예산 사용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를 해도 되지 않나. 다만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 견적서 이런 부분은 영업비밀인가요? 영업비밀로 본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작성한 제작계획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하겠나, 아니면 또 예산과목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공개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쭙봤는데요.

그러면 제작계획에서 소요예산만 공개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 000 주무관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지금껏 사례나 이런 걸 봤었을 때 금액 정도하고 저희 예산과목의 부분들은 공개를 할 의향이 있다 해서 저희가 부분공개, 부분인용으로 저희가 안건 상정을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 있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부서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고요. 저희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퇴장)

그러면 주심이신 위원님께서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 000 위원(장)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작계획에서 소요예산 이 부분은 전부 다 공개로 하고요. 또 산출기초조서 이 부분 비공개로 하셨는데요. 업체가 제시한 금액들은 이 업체도 비공개를 원하고 있고, 또 영업비밀로 포섭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 부분공개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저도 주심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저도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부분공개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소요예산하고 아까 말씀하신 산출예산표입니까? 위원님.

○ 000 위원(장)

소요예산은 이미 비공개로 나갔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공개한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 000 위원(장)

지금 방침서는 이미 부분공개가 됐고.

○ 000 위원(장)

제작 계획 있잖아요. 이거 전체 다 공개한다는 거잖아요. 부분공개였는데 전부 다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출기초조서 이 부분은 비공개고요.

○ 000 위원(장)

산출기초조서는 비공개고요.

○ 000 위원(장)

제작계획에서 소요예산은 비공개였는데 이번에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분공개가 맞을 것 같은데요.

○ 000 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여 위원님 네 분 전원 부분공개 의견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소관부서께서는 다시 재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입장)

지금 소관부서에서 이미 방침서를 부분공개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산출기초조서는 비공개로 하고요. 제작계획서에서 소요예산까지 해서 이 제작계획서를 다 전부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23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안번호 2024-24] : 수변특례구역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배포(수변감성도시과-3988, 2024.3.18.) 문서(붙임파일 수변특례구역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포함)

○ 000 위원(장)

두 번째 안건은 의안번호 제2024-24호 수변감성도시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000 위원님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장)

안녕하세요.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겠는데요.

지금 주신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으로는 일단 전부 비공개로 나간 게 맞으신 거지요?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주신 비공개 자료에 공문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 배포가 있고 별책과 보고서가 있는데요.

지금 청구인이 요구하고 있는 정보는 여기 별책과 보고서까지를 다 포함한 걸로 보면 되나요?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붙임파일에 관심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이드라인 배포 공문 전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책자.

○ 000 위원(장)

별책.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장)

여기 배포 공문에는 공문 자체도 어쨌든 청구된 정보 내용이 들어가는데, 여기 공문에도

노란색 부분만 소관부서에서도 비공개 처리이신 건가요? 공문 자체 전부가 비공개 의견이신 건 아닌가요?

○ 000 주무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공개를 해도 관계가 없기는 한데, 비공개 처리를.

○ 000 위원(장)

그렇지요. 저는 이거 공문 자체는 사실 공개해도 특별한 내용이 아닌 걸로 보여서.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소관부서에서도 공문 자체는 특별히 공개가 돼도 별로 상관이 없으신 건가요?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네. 이게 내부검토 중에 있는 자료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이 사업은 그러면 지금 내부검토 중이다라고 하면 언제 종결이 된다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 000 주무관

우선 내년까지 한번 지켜보고 한 2026년도에서 2027년도 정도면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000 위원(장)

이후에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장)

지금 이의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이미 공개가 된 정보들이 있다 이렇게 기재한 부분이 있어요. 사업계획과 진행상황들을 수차례 공개했다 이렇게 하면서 2022년 4월에 수변감성 도시 시 전역 확산 이런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공개를 했었다는 정보인가요? 이거 관련 기사인가요, 어떤 정보들인가요?

○ 000 주무관

그런 정보는 아마 2022년도에 시장 방침서에 있는 수변특례구역 지정과 관련된 그런 개요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구역 지정에 관한 개요 정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000 주무관

네. 개략적으로,

○ 000 위원(장)

개략적으로 공개를 했었다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 청구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정보들이랑 지금 추가로 정보공개신청을 하는 정보들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 000 주무관

시장 방침서상에 있는 그런 수변특례구역 관련 내용이 조금은 더 구체화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기존의 개요에서 구체화된 정보에 해당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000 위원(장)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이 가이드라인 자체는 확정된 거 아닌가요?

○ 000 주무관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거라기보다는 이거는 자치구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서 계속 보완해야 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수변감성도시 시범사업 이게 진행 중이다 이거는 제가 알겠는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정한 기준을 지금 서울시가 정한 거잖아요.

○ 000 주무관

네. 이런 기준 자체가 없어서 저희 서울시에서 먼저 용역을 추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25개 자치구에 배포를 했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지금 노원구,

○ 000 위원(장)

이게 그러면 전형적인 행정규칙인데 행정입법의 일종으로서 행정규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정규칙이 나중에 개정될 수야 있겠지만 일단은 가이드라인 작성은 끝난 것이고, 심지어 각 자치구에 배포까지 했으면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는 일단 지금 성립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가이드라인 자체는 지금 그러니까 일단 배포를 해서 이걸 기준으로 삼아라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가이드라인 작성은 지금 완료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000 주무관

이 가이드라인 내용 자체에 보면 자치구에서 자체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고, 미비점이 있을 때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서 이게 어떤 완결된 상태가 아님을 그렇게 내용상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법령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법률이 완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자치구에서 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애초에 서울시 가이드라인에서 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지금 완성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이네요.

○ 000 주무관

현재 완성이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도대체 어느 단계가 돼야 가이드라인이 완성됐다고 할 수 있어요?

○ 000 주무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라서,

○ 000 위원(장)

이 사업은 별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 중인 건 알겠는데, 사업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지금 완성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되지 않은 가이드라인 갖고 사업 추진계획을 하라는 얘기가 더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이 가이드라인은 지금 확정이 된 거고. 그런데 수변특례구역 지정운영 이 업무가 지금 미확정이라는 거 아닌가요? 가이드라인 자체가 내부업무 지침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거보다 좀 더 약한 성격의 업무지시인가요?

○ 000 주무관

조금 약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리고 첨부자료로 올려주신 거 있잖아요. 수변특례구역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활용보고 이 보고서는 공개가 된 건가요?

○ 000 주무관

이것도 일부가 비공개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장)

비공개됐고,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을 좀 축약한 내용이 이 활용보고서인가요?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몇 가지 여기 있겠네요?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를 드리자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게 비공개 사유에서 이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일종의 소위 윤곽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그 윤곽, 틀 안에서 해당 자치구들이 자율적으로 재량껏 하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그걸 갖고 비공개 사유로 다시 언급을 하니까 이게 비공개 사유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거고요. 다음에 내부검토 중인 문서라는 것도 방금 000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미 가이드라인은 작성해서 배포가 됐기 때문에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내부검토 중인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혹시 제가 질의하는 바는 지금 이 수변특례구역 지정·운영 관련해서 혹시 각 자치구마다 좀 지정이 되고 그러면... 구역 지정은 끝났습니까?

○ 000 주무관

수변특례구역 지정을 한 자치구는 없고요. 이 수변특례구역 지정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는 자치구는 현재 노원구가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구역 지정이 되고 이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면 주변지역에 부동

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그런 어떤 유발 효과가 있겠지요?

○ 000 주무관

저희 부서가 그것까지는 고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 000 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는 없으니까 소관부서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십시오.

(소관부서 주무관 퇴장)

위원님, 먼저 의견을 말씀 주십시오.

○ 000 위원(장)

비공개 대상 문서 중에 공문 자체는 특별히 비공개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서 이거는 공개 의견이고요.

그리고 별책과 보고서는 저는 그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자치구들마다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하는 그 사업기간이 보통 빠른 것은 2022년부터 있었는데 보통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로 그렇게 기재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의 이런 내용을 받아서 각 자치구들마다 어디를 딱 지정을 할지 세부 가이드를 검토 중에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서 내부검토 과정으로 포섭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쨌든 가이드는 확정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저도 결정을 했으면 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저는 이게 가이드라인에 방점을 둔 게 아니라 수변특례구역 지정·운영 이 업무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래서 내부검토 중인 사안이다 이렇게 봐서 이거를 비공개 의견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가이드라인으로 나눠서 보면 이게 수변특례구역 지정·운영은 확정됐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라 이런 부분이면 또 이게 공개 대상인 것 같고요. 이럴 때 전부 공개하는 것보다는 비공개했다가 조금 더 업무 추진되는 걸 봐서 공개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저는 일단은 운영매뉴얼 구축이라는 이 본문 자체는 비공개해도 될 것 같지만, 그러니까 보고서는 비공개도 될 것 같지만요. 공문하고 별책, 그러니까 별책이랑 가이드라인만 있는 데요. 이걸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이드라인은 우리 행정법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순수한 행정규칙이거든요. 그런데 순수한 행정규칙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입니다. 행정입법입니다. 행정입법은 우리 행정절차법상으로도 공개가 원칙이고요. 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처분기준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분기준 설정공표 원칙에도 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입법은 일단 이렇게 행정에 참고하라고 배포까지 한 이상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고, 그거는 우리 행정절차법상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무슨 내부검토 중이다 이런 사유로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정은 저는 과거 1980년대, 1990년대에나 있었던 것이고, 최근에는 어떤 유형의 행정입법도 다 공개하고 있고, 우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이 공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형식과 불문하게 법령의 형식으로 행정이 만들었으면 그것은 무조건 공개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나서 아까 담당자가 지금 얘기한 것들은 가이드라인의 성격에 대해서 외부에서 좀 갖는 오해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비구속적인 것인데 그거를 구속력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오해의 여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성격이나 효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교육하고 홍보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그런 이유로 비공개를 해야 된다면 우리나라의 순수한 의미 행정규칙이 다 그런 이유로 비공개가 돼야 된다는 논리로 갈 수밖에 없어서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 보고서 자체의 비공개는 동의합니다마는 공문과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000 위원(장)

저도 000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저도 지금 다시 붙임문서 두 개를 나누어서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별책은 공문의 구체화된 어떤 지금 말씀 주신 행정입법이라고 보게 된다면 보고서를 제외하고 이 별책은 공개하는 것으로 저도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저도 따르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은 소위 심의위원 네 분 모두가 다 보고서는 비공개로 하고, 해당 공문과 가이드라인 별책은 공개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없음)

그러면 소관부서는 재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입장)

본 안건은 저희 주심위원 네 분 모두가 다 해당 보고서는 비공개로 하고, 공문과 가이드라인 별책은 공개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24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번호 2024-25] : △△재정비촉진지구 3-8, 3-9, 3-10 구역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심의의결 관련 자료

○ 000 위원(장)

세 번째 안건은 의안번호 제2024-25호 건축기획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 000 위원(장)

반갑습니다. 본 안건은 제가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3-8, 3-9, 3-10구역 재개발사업 심의의결 관련해서 지금 청구내용이 꽤 많은데요. 그런데 소관부서의 입장은 보면 해당 건축 관련 법령상 비공개 사유다라고 하는 거 하고, 정보가 부존재하다는 거를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먼저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해당 관련자료가 구청으로 이송이 됐다고 하는 게 이게 서울시 입장에서 정보 부존재라고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그러니까 이 해당 정보는 지금 구청으로 지금 가 있잖아요.

○ 000 주무관

구청으로 저희가 기관이송을 했고요. 그래서 2024년 4월 5일에 구청에서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 000 위원(장)

답변을 완료했다는 거는 해당 정보공개청구인에게 답변을 완료한 건가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장)

답변을 완료했다는 거는 어떻게 답변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 000 주무관

제가 담당 주무관부터 듣기로는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은 공개하고 부분공개로 진행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해당 구청에서는 부분공개 결정을 이미 했다는 거지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건축심의회의록을 지금 공개토록 요구를 하는데요. 소관부서에서는 우리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 중에 관련 법령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서 이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또 흥미로운 점은 청구인 측은 이 해당 비공개 사유를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에서는 건축심의를 신청한 자만 소위 이렇게 하나의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공개하도록 되는데요. 오히려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관련 법령을 해석해 보면 이 건축심의를 신청한 자가 제한적으로 회의록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건축심의를 신청한 자가 아닌 이외의 사람은 해당 관련 법령에 따르면 회의록 공개나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 000 주무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 있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잠시 퇴장하셨다가 저희들이 토의 끝나고 나서 다시 재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퇴장)

안건과 관련해서는 방금 제가 질의를 한 대로 정보공개법상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일단 비공개로 기각을 하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이미 관련자료가 구청으로 이송되었고, 그쪽에서 해당 부분공개 결정했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정보 부존재라고 하는 입장에서 또 이결 각하로 해야 되는데요. 건축 심의회의록은 관련 법령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서 기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서 건축주·건축심의신청일, 건축심의신청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이 자료는 서울시에서 부존재해서 각하 이렇게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저는 동의합니다.

○ 000 위원(장)

동의합니다.

○ 000 위원(장)

동의합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은 기각 및 각하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고 하고요.

(소관부서 주무관 입장)

소관부서께서는 재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는 의견입니다.

건축회의심의록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므로 기각하고요. 다음에 나머지 정보공개 요청서류 그러니까 건축주·건축심의신청일, 건축심의신청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등은 정보 부존재로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25호**는 “기각” 및 “각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안번호 2024-26] :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용역의 최종보고서

○ 000 위원(장)

의안번호 제2024-26호 주거정비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000 위원님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장)

간단히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보고서 자체는 완결이 된 건가요?

○ 000 팀장

완결은 되었습니다.

○ 000 위원(장)

이게 혹시 언제 완결된 건가요?

○ 000 팀장

2022년도에 완결되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내부검토 중인 자료다라고 판단하신 것은 용역보고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정비사업이 아직 안 끝나서 그래서 내부검토 중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신 건가요?

○ 000 팀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구역에 대해서 관리처분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인데, 현재 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관리처분내역 자체가 조합의 중요한 내부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오히려 소송 같은 것들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용역을 해서 나온 어떤 제도개선 내용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 지금 표준정관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들 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하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조합의 어떤 비밀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사유를 여쭙본 것이 아니고, 내부검토 중이나 아니냐 이거를 여쭙본 것인데요. 지금 쓰여 있기로는 이 내부검토 중인 이유가 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정비사업들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것이 그랬다 이렇게 써 놓으셔서 제가 여쭙본 건데요.

지금 말씀으로 보니까 그것도 그건데 지금 이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하실 거고, 그 내용은 현재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지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맞는 거지요?

○ 000 팀장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제도개선이 되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 공표를 하시게 되나요?

○ 000 팀장

지금 저희가 저희 용역 자체로는 공표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처분 같은 경우에는 법령개정이나 아니면 표준정관 같은 곳에 넣어서 그걸 활용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실제로 수립할 때 반영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법령개정이야 어차피 입법예고가 되니까 그때 알게 될 거고요.

표준정관은 그것은 발표를 하시는 거지요, 공표를?

○ 000 팀장

그 조항에서는 고시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소관부서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셨다가 나중에 재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팀장

알겠습니다.

(소관부서 팀장 퇴장)

○ 000 위원(장)

먼저 주심위원님이신 000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장)

5호, 7호, 8호 이렇게 비공개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7호, 8호 사유는 저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아까 지금 담당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개별 정비조합의 상당히 중요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공개될 경우에는 부동산투기 같은 것에 활용될 여지도 있어서 7호, 8호 사유는 확실하다고 보고요.

5호 사유는 지금 이의신청서에 있는 사유는 사실 적절하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보고서에 들어있는 정비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다가 용역보고의 종료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여서 그게 검토 중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다만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자료가 향후에 제도개선의 어떤 자료로 쓰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리처분 관련된 제도 개선이라는 그 측면에서는 내부검토 중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요. 그리고 또 그거는 규제의 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법령이나 표준정관이 나오게 되면 그건 다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결

과물을 보고 알게 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호, 7호, 8호 사유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저도 같습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저도 동의합니다.

○ 000 위원(장)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소관부서께서는 다시 제 입장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팀장 입장)

본 안건은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합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제2024-26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안번호 2024-27] : 제3차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처분결과

○ 000 위원(장)

의안번호 제2024-27호 건축기획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000 위원님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장)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특정 건축사 징계에 대해서 문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요. 비공개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청구인이 △△△△△△ 거기 계약자라고 하시는데요. 혹시 이 건축사가 여기에
서 감리 역할을 맡다가 징계를 받으신 건가요?

○ 000 팀장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이 계약자단체에서 뭔가 이의제기를 많이 했던 상황이었나요?

○ 000 팀장

저희가 듣기로는 송파구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이
감리자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이거 민원인이 이분을 고소를 했는지 신고를 했는지 문자로 징계의결결과
는 통보가 됐더라고요.

○ 000 팀장

송파구에서 한 결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송파구에서 통보가 됐고, 그 문자 받은 당일날 어떤 내용으로 징계가 됐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하신 거지요?

○ 000 팀장

네.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정보공개청구하신 겁니다.

○ 000 위원(장)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달라 이런 거잖아요.

○ 000 팀장

네.

○ 000 위원(장)

그런데 여기 처분 뒤에 보면,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서 보면 되게 대상자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잠실푸르지오 이분만 여기에 당사자고 나머지는 다 상관이 없는 분들인가요?

○ 000 팀장

맞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징계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거를 공개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없습니다.

○ 000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님은요?

○ 000 위원(장)

따로 없습니다.

○ 000 위원(장)

저도 없고요.

그러면 소관부서께서는 잠시 퇴장하셨다가 나중에 재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퇴장)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장)

이미 당사자한테는 징계처분의결 통보가 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건데요.
그 징계내용은 인사관리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비공개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저도 동의합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저도 동의합니다.

○ 000 위원(장)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개인의 어떤 징계사항은 하여튼 일관되게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고 결정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께서는 다시 재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입장)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
정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27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